

## 건축협정 인가공고

파주시 다울동 1037-5번지 외 1필지 상의 건축협정 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77조의6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9 규정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6. 4. 3.

파 주 시



- 명 칭 : 파주시 다울동 1037-5번지 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
- 목 적 : 건축협정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
- 대지위치 : 다울동 1037-5, 1037-6
- 유효기간 : 건축협정 폐지 시까지
- 협정내용 : 건축법 제77조의13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의7(건축협정에 따른 특례)
  - 조경, 부설주차장 등 부대시설 통합
  - 건폐율, 용적률 통합
  - 지하층의 설치
  - 맞벽건축의 구조 및 형태
  - 계단 및 E/V 등 공용부 통합 설치
  - 건축설비(전기, 통신, 상하수도 등) 통합
- 게시장소 : 파주시 홈페이지
- 기 타 : 관계도서는 파주시청 허가3과(☎031-940-8781)에서 열람 가능. 끝.